



제428 회국회(임시회)
제1 차보건복지위원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00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21.

(3) 회 부 일 : 2025. 4. 22.

2.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체계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기관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나, 실종아동·장애인과 관련한 정책 개선이 특정 실종 사건 발생 때만 각각의 부처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기관 간에 협업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또한, 전반적인 전달 체계와 관련하여 개선할 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미진한 상황임.

이에 실종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실종아동·장애인 정책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종아동 등 관련 기관 간의 연계·협

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실종장애인 관련 업무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의 개선 및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마. 시·도 및 시·군·구에 실종아동 등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두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치매 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 신설).

Ⅱ. 검토 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종아동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종장애인 관련 업무를 중앙발달장애인지원 센터를 위탁하며, 국무총리소속의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를 신설 하여 실종아동등 관련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한편,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에 실종아동등전담공무원을 두며, 보건 복지부 장관이 지적장애인 등에 개인정보 위치 수집장치를 보급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의 책무)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 ----- ----- ----- ----- ---
1. ~ 6. (생 략) <u><신 설></u>	1. ~ 6. (현행과 같음) <u>7. 실종아동등 관련 기관과의</u>
7. (생 략)	<u>연계·협력 체계 구축</u>
②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아동복지법」 제10조에	② (현행과 같음)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	<u><삭 제></u>

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와
제2항의 경찰청장의 책무 등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수행을 종합·조정한다.

제5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
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아동복지법」 제10조
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제5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
탁) ① -----

----- 「아동복지법」 제10조
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
터-----.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
원회) ①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관
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
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실종
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복귀를 위한 정책 수립에 관
한 사항

2. 실종아동등 관련 정책의 개

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실종아동등 관련 부처 간 협

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부장관 ·

법무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여성가족부

장관

2.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

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

하는 10명 이내의 위원

④ 위원회는 실종아동등 정책

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

으로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 ·

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신 설>

<신 설>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실태파악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종아동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실종아동등전담공무원)

① 실종아동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실종아동등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실종아동등의 현황 관리, 실종아동등의 가족 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업무를 수행한다.

<신 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의5(위치정보 수집장치의 보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개인위치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집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보급할 때 개인위치정보주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

사소통이 어려운 장애 등으로 스스로 동의를 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음성·문자·그림 등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동의를 절차·방법 및 예외 사유 등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 수집장치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요 검토사항

(1)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조정 거버넌스 체계

□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조정 규정을 삭제하면서(안 제3조제3항 삭제),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별도의 국무총리 소속의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아울러 실질적인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5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의 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 ----- ----- ----- ---
1. ~ 6. (생략) <u><신설></u>	1. ~ 6. (현행과 같음)
7. (생략)	<u>7. 실종아동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u>
② (생략)	<u>8. (현행 제7호와 같음)</u>
③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	② (현행과 같음) <u><삭제></u>

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와
제2항의 경찰청장의 책무 등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수행을 종합·조정한다.

<신 설>

제5조의2(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
원회) ①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관
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
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실종
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복귀를 위한 정책 수립에 관
한 사항

2. 실종아동등 관련 정책의 개
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실종아동등 관련 부처 간 협
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u>기획재정부장관 · 교육부장관 · 법무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u> 2. <u>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u> ④ <u>위원회는 실종아동등 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u> ⑤ <u>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 · 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 ⑥ <u>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공동소관 법률로 복지부는 실종아동등 예방·홍보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업무를, 경찰청은 실종아동등 찾기 활동 및 유전정보

관리 등에 관련한 업무를 소관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제3조제3항1))에서는 「아동복지법」(제10조2))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들 기관의 책무수행을 종합·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실종아동법 소관 구분 >

- 「실종아동법」 조문 분류기준 : 수행주체를 기준으로 분류
- (보건복지부) 실종아동 예방(교육,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가족지원(의료 및 상담 등)에 관한 업무 등
- (경찰청) 실종아동등 찾기 활동(수색·수사·발견·복귀) 및 유전정보 관리·이용·채취 등에 관련한 업무 등
- (공통) 벌칙·과태료에 관한 사항, 지자체 및 보호시설 연계 업무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 수행 종합·조정

- 참고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실종아동등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정책 조정 등 업무를 수행한 바를 살펴보면 실종아동등 정책은 아동정책 기본계획 등에 관한 논의 시 세부안건으로 논의된 바 있음.

<역대 아동정책조정회의 안건 목록>

연도	회의 안건
'04.12월	- 아동정책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실종아동 예방 및 홍보, 찾기사업 추진)
'05.12월	- '05년 아동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심의·조정
'06.12월	- UN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 및 이행상황 - '06년 아동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07.11월	- UN아동권리협약 및 WFFC(A World Fit For Children) 이행성과 - 아동종합대책 성과평가 및 향후계획

1) 제3조(국가의 책무) ①~② (생략)

③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와 제2항의 경찰청장의 책무 등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수행을 종합·조정한다.

2)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⑦ (생략)

'14.2월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계획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방향
'15.5월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19)(3-3-2-2. 실종아동 예방)
'15.12월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15년 시행계획(3-3-2-2. 실종아동 예방)
'16.3월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16년 시행계획(3-3-2-2. 실종아동 예방)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대책
'16.12월	- '15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시범평가 결과(3-3-2-2. 실종아동 예방)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17.4월	- 2017년 아동정책시행계획(3-3-2-2. 실종아동 예방)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통합 국가보고서
'18.5월	- 2016년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결과(3-3-2-2. 실종아동 예방) - 2018년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3-3-2-2. 실종아동 예방)
'19.1월	- 2017년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결과 (3-3-2-2. 실종아동 예방) - 2019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3-3-2-2. 실종아동 예방)
'20.1월	- 2018, 2019년 제2차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결과(3-3-2-2. 실종아동 예방) -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계획
'20.7월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3-1-3-2.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찾기 지원 확대) - '19년 아동총회 결의문 및 조치계획 - 코로나19에 대응한 아동정책 방향
'21.4월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1년 시행계획(3-1-3-2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찾기 지원 확대)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현황 - 놀이혁신 행동지침
'22.1월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2년 시행계획(3-1-3-2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찾기 지원 확대)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현황 보고 - '21년 아동총회 결과 및 추진계획
'23.4월	-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 학대피해 발굴·보호 강화 방안 -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 - 2022년 아동총회 결과 및 추진계획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3년 시행계획(3-1-3-2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찾기 지원 확대)
'24.3월	- 출생통보 및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 추진 상황 - 2023년 아동총회 결과보고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3-1-3-2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찾기 지원 확대)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상인 ‘실종 아동등’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외에도, 연령과 관련없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동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³⁾, 보다 전문적이고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동 또는 정신장애인

실효성있는 정책 수립과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등에도 금번 개정 내용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국무총리 소관의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인 만큼 국무총리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는 있겠고, 아울러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개정안의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동일·유사하여 별도 위원회 신설의 실익에 대해서는 이견도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실종아동등의 정책 사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 형식⁴⁾으로 설계하는 방안도 가능한 할 것으로 보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 비교>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좌동
위원수	25명 이내(위원장 포함)	20명 이내(위원장 포함)
위원 구성	-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15명 이내</u>)	-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10명 이내</u>)

-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법 제8조1항에 관련 기관간 협력 체계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현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실종아동등 국가책무수행의 종합·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아동복지법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③ (생략)

- ④ 위원회는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처 의견 >

국무 조정실	○ 현재 「실종아동법」 제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아동정책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수행을 종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소속, 위원장, 목적 등이 개정안의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와 유사하므로, 별도 위원회 신설보다 기존 위원회 활용이 타당 - 필요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는 방법 등 고려 필요																		
행전 안전부	○ 법률안의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복귀를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소속 자문위원회임 - 현재는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 수행을 종합조정하도록 되어있으며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소속, 위원장, 목적 등이 개정안의 ‘실종아동등 통합조정위원회’와 유사하므로 별도의 위원회 신설보다 현행 위원회를 활용하되 - 특정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므로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는 방법 등 고려 필요 <table><tr><td>구분</td><td>아동정책조정위</td><td>실종아동통합조정위</td></tr><tr><td>소속</td><td>국무총리</td><td>동일</td></tr><tr><td>위원장</td><td>국무총리</td><td>동일</td></tr><tr><td>당연직위원</td><td>기재·교육·법무·행안·문체·산업·복지·고용·여가</td><td>기재·교육·법무·행안·복지·여가</td></tr><tr><td>위촉직 위원</td><td>아동관련 단체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td><td>동일</td></tr><tr><td>목적</td><td>종합적 아동정책 수립, 관계부처 의견조정 등</td><td>실종아동등에 관한 종합적 정책 수립, 관계부처 의견조정</td></tr></table> ※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 이하에 설치근거를 두고 존속기한(최대 5년)을 명시하여야 함	구분	아동정책조정위	실종아동통합조정위	소속	국무총리	동일	위원장	국무총리	동일	당연직위원	기재·교육·법무·행안·문체·산업·복지·고용·여가	기재·교육·법무·행안·복지·여가	위촉직 위원	아동관련 단체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동일	목적	종합적 아동정책 수립, 관계부처 의견조정 등	실종아동등에 관한 종합적 정책 수립, 관계부처 의견조정
구분	아동정책조정위	실종아동통합조정위																	
소속	국무총리	동일																	
위원장	국무총리	동일																	
당연직위원	기재·교육·법무·행안·문체·산업·복지·고용·여가	기재·교육·법무·행안·복지·여가																	
위촉직 위원	아동관련 단체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동일																	
목적	종합적 아동정책 수립, 관계부처 의견조정 등	실종아동등에 관한 종합적 정책 수립, 관계부처 의견조정																	
경찰청	○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업무는 특정 기관만의 업무가 아니므로 여러 부처 간의 협력을 위해 국무총리 주관의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정안에 공감함 ○ 다만, 개정안 제5조의2제3항제1호의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 구성에서 경찰청장을 제외하고 있는데, - 경찰청은 법률상 실종 대응·예방 실무를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 국가 실종정책 수립·조정이라는 본래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장의 위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 ○ 또한, 개정안 제5조의2제3항제2호는 아동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등(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을 포괄하는 위원 구성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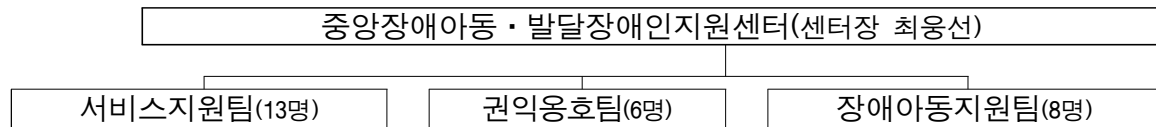
(2) 업무위탁기관에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추가

- 개정안은 실종 지적장애인 등을 위한 전문위탁 수행기관으로서 중앙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추가하고 있음(안 제5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① -----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요 >

- (설치근거)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 (운영예산) 1,565백만원('25년 기준)
- (주요업무)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2.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5.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7.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등
- (인력 등 조직현황)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현재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는 아동·지적장애인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치매 환자의 경우는 중앙치매센터에서 각각 위탁수행하고 있음⁵⁾.

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위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란 「치매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이하 “중앙치매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한다.

1. 아동권리보장원: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종아동등에 관한 업무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2. 중앙치매센터: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서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에 해당하는 실종아동등에 관한 업무

- 아동권리보장원은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의 실종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에는 다소 미흡할 수 있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적장애인 실종대응 업무수행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개정안과 같이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전문업무 위탁기관에 추가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임.
- 다만,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전문업무 위탁기관으로 법률에 명시할 경우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전문업무 위탁기관으로 인정되고 있는 중앙치매센터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법 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하여 실종장애인 대응 업무까지 병행하도록 할 경우 업무부담 가중으로 인한 인력충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 외에, 법체계상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수행기관 지정은 하위법령으로도 위임되어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등 대상 유형별 특성에 맞는 예방과 찾기를 위해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전문기관 위탁 필요성에 공감하나 현행 법률에 위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일관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단체 의견 >

중앙발달 장애 지원센터	○ 「실종아동법」의 ‘아동등’은 제2조1호나목에 의하여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 제33조에 의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 보호자 등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서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지원은 발달장애인법 제정 취지와 상이하며, ○ 또한, 제34조에 의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주간활동 서비스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사업, 후견업무 지원, 권리구제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실종아동법 제3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등을 위한 업무는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

(3) 실태조사 실시

- 개정안(제5조의3)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종아동등의 실태파악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종아동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실태파악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종아동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과 같이 정례화된 실태조사 실시는 실종아동 등의 실태파악 외에도 실효적인 정책수립 및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나, 실종아동등에 관한 업무는 크게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만큼,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경찰청과의 업무 분담 내지는 협업에 관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그 외, 최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5. 1. 1.)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실종

아동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해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제16조의2).

-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보면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 조사가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추진실태 및 평가결과, 실종아동등의 사례 분석 등 다양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개정안의 실태조사 도입 취지와 연차보고서 취지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 연차보고서 포함 내용 >

- | |
|---|
|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
| 2.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결과 |
|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홍보 현황 |
| 4.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현황 |
| 5.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통계 |
| 6.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현황 |
| 7. 실종아동등의 사례 분석 |
| 8.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현황 |
| 9.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발견·보호·지원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 |

-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법 제16조의2에 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 정책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국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연차보고서는 실태조사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시·군·구 등에 실종아동등 전담공무원 배치

- 개정안(안 제5조의4)에서는 실종아동등의 현황 관리, 가족 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을 위해 시·군·구 등에 실종아동등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5조의4(실종아동등전담공무원) ① 실종아동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실종아동등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실종아동등의 현황 관리, 실종아동등의 가족 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지자체에서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는 아동보호담당자와 각 유형별 시설담당자(아동·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가 업무성격에 따라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 바, 발견된 아동에 대한 보호와 실종된 아동의 신상 정보를 관리하여 찾기정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아동 보호서비스체계 안에서 아동보호팀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시설 등이 무연고 아동등을 보호하게되었을 때 시설입소카드 외에 신상정보 카드를 작성하여 지자체와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제출하는 의무의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개별 시설업무의 담당자의 업무임

< 실종아동법 상 지자체 역할 >

1. 실종아동등 보호시 경찰관서에 신고접수서 제출(실종아동법 제6조제2항)
2. 신상카드 작성 및 제출 여부 지도·감독(실종아동법 제6조제3항,제5항)
3. 관계장소 출입·조사(실종아동법 제10조)
4.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실종아동법 제19조)

< 실종아동등 관련 기관별 업무분장 현황 >

구분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자체	아동보장원 중앙치매센터
업무	· 실종아동등 지원 관련 정책수립·연구·예방 홍보·정보연계 시스템 DB 구축 등	·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수색 및 수사·유전자 검사, 그밖에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경찰관서에 실종아동 등 발견 신고 · 신상카드 작성·제출 관련 지도·감독	· 실종아동등 지원 관련 연구·예방 홍보·정보연계 시스템DB 구축 등

- 실종아동등 전담공무원을 두게 되는 경우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입법례로 「아동복지법」(제13조⁶⁾)에서는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등을 위해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편, 금번 실종아동등 전담공무원 제도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예산 확보에 관한 것인 만큼,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자격요건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사례에서와 같이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분장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전담여부에 관한 규정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①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⑤ (생략)

(5)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보급

-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의 적용대상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 장애인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개인 위치정보 수집 장치 보급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의5 제1항), 아울러 개인위치정보 수집장치 보급 시, 개인위치 정보 주체(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 등으로 스스로 동의를 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안 제7조의5제2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5(위치정보 수집장치의 보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개인위치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집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 수

	<u>집장치를 보급할 때 개인위치 정보주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 등으로 스스로 동의를 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③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음성·문자·그림 등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u> <u>④ 동意的 절차·방법 및 예외 사유 등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수집장치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 실종 예방과 함께 치매나 지적 장애인 등의 경우 신속한 위치정보 확보를 통해 초기 대응이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개정안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유전자 검사 등의 과학수사와 CCTV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최근 5년간 실종아동등의 실종발생 신고접수 건수는 3만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의 경우 미발견 비율이 일반 18세 미만 아동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실종아동등 신고 및 미발견 현황 >

(경찰청, '24.12월말, 단위 : 건)

구분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전체)		(18세 미만)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총누적	-	1,190	-	227	-	35	-	227
'20년	19,146	4	7,078	6	947	0	12,272	2
'21년	21,379	2	7,166	4	740	0	12,577	9
'22년	26,416	9	8,881	6	943	0	14,527	8
'23년	25,628	7	8,440	13	922	0	14,527	12
'24년	25,692	23	8,430	17	956	13	15,502	13

* 접수: 당해연도 기준, 미해제: 현 시점 기준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민간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부터 치매환자 및 발달장애인에게 매년 4천여 건의 위치추적기(배회감지기) 및 통신비(2년)를 지원하는 ‘행복 GPS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참고자료 1), 아동권리보장원은 협약사업 대상이 아닌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단말기⁷⁾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인지장애가 있는 장기요양 보험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배회 감지기를 대여하여 지원⁸⁾하고 있기도 함.

7) 위치 측위 기능이 탑재된 단말기로서 보호자가 정해 놓은 활동지역을 벗어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기임. 치매환자는 중앙치매센터에서 위치추적 앱을 지원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배회감지기를 지원하고 있음.

8) 2023년 말 기준 4,293건 이용 중으로, 기기대여료와 통신비의 85%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은 월 900원~5,300원 발생함.

< 아동권리보장원 위치추적단말기 지원사업 개요 >

- (대상) 실종신고 이력이 있는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 (내용) 2019년부터 장애인의 반복 실종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동의) 또는 실종신고 이력이 있는 장애인의 보호자 요청 시 장애인에게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
 - * (지원내역) 단말기 기기 구입 및 통신비(2년) 지원
 - * 2024년부터 서비스 중복배제를 위해 정신장애인 우선지원하고 발달장애인 등은 다른 기관 지원에서 누락된 경우에 지원

○ 위치추적단말기 지원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원현황	86대	93대	169대	157대	118대	10대

* 치매환자에 대하여는 중앙치매센터에서 위치추적 앱(치매체크앱 기능)을 지원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배회감지기를 지원하고 있음

□ 첫째, 발달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에서 직접 개인위치정보 수집 장치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발달 장애인 등의 사생활의 자유 및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법안의 시행에 따른 직접적 관련 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위치정보 수집장치 보급 시, 개인위치 정보주체(개인위치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의 동의 예외와 관련된 것임.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안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 및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위치정보 수집장치 보급 시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 등으로 스스로 동의를 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적장애인⁹⁾ 등의 실효적인 자기결정권 보호 방안

9)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등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참고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
제3호)에서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중증장애인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보호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
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
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의 실종예방과 조속한 발견을 위해 개인위치정보 수집 장치의
보급 및 근거 규정 마련의 취지에 동의하나, 인권 논란 및 그간의
장애인 단체 반대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
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처 및 단체 의견 >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 개정안은 제2항 단서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 등으로 스스로 동의를 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제4항에서 개인위치정보주체 동의 예외 사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워 보호자* 등이 동의를 대신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됨,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음(법률유보의 원칙) * 통상 ‘법정대리인’ 용어가 사용되나, 실종아동보호지원법에서는 ‘보호자’가 사용됨 따라서,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등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사)정신 장애인권 연대	○ 정신장애인인권연대는 개정안 제7조의5의 “위치정보 수집장치 보급”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려를 표명합니다. 1) 장애인 인권 침해 소지: 정신장애인의 자율성과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큰 우려가 있으며, 동意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2) 낙인 효과: 실종 위험군으로 정신장애인을 일반화하여 낙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 원칙과 충돌: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탈시설 정책에 반할 수 있습니다. 4) 예방 대책은 기술 장치보다 돌봄 시스템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법률안 제7조의5는 정신장애인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 (개인위치정보수집장치 보급은) 실종 등의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법으로 명시될 경우 사실상 이들을 감시의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어 중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 ○ 특히 ‘동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나, 실질적 의사표현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형식적 동의 또는 대리 동의를 통해 사실상 강제적 부착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법제화 보다는 필요한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여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 의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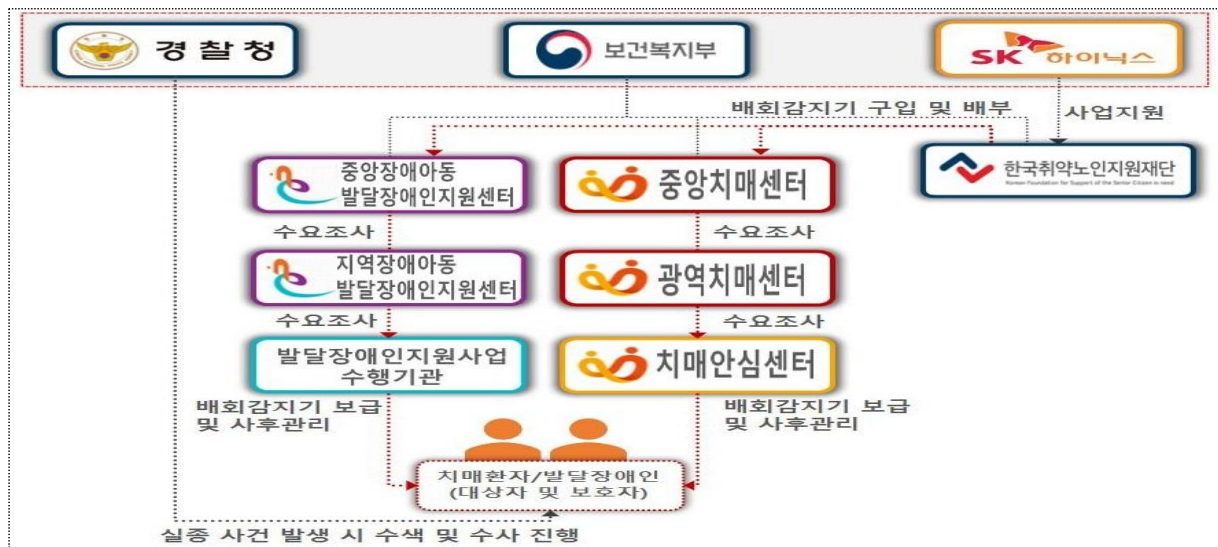
02)6788-5496

참고 1

행복GPS사업<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협약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명) 복지부·경찰청·민간협력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행복GPS 사업)
- (사업내용) 민간협력으로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 보급 및 통신비(2년) 전액 지원('21년~)
 - ※ 민간기업(SK하이닉스) 사회공헌활동 기금으로 운영되어 연간 배부물량 제한
 - ※ (협약연혁) (1차, '17.8.)경찰청-SK하이닉스 → (2차, '21.7) 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3차, '24.7.5) 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 (지원대상) 배회나 실종경험 혹은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인지저하자
- (사업 수행체계)
 - (SK하이닉스) 후원금 조성(행복나눔기금) 및 배회감지기 무상 지원
 - (보건복지부) 배회감지기 보급<중앙치매센터,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경찰청) 사업 홍보, 실종 시 수색, 수사에 활용 및 사례관리



□ 연도별 보급현황

(단위 : 대)

구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치매환자	10,584	3,106	2,567	1,861	3,050
발달장애인	6,354	2,044	1,700	1,010	1,600
합계	16,938	5,150	4,267	2,871	4,650

※ 2023년의 경우 기기 모델 변경 및 단가 상승(이전 기종 대비 2배)으로 지원대수 감소